

의안번호	제10호
의결 년월일	2025. 2. 19. (제326회)

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금 산 군 수
제출년월일	2025. 2. 7.

#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0호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2. 7.
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(30만원→45만원 미만)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가능 기준금액을 조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 금액 상향 조정(안 제5조제1항)
  - (현행) 30만원 ⇨ (개정안) 45만원
  - ※ 용어 변경 : “증가산금”→ “납부지연가산세”로 변경
- 알기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조문 정비  
(안 제3조,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, 제7조,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, 제55조, 제56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- 기 타
 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담당관-17078)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담당관-16805)
  -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인구교육가족과-40885)
  - 입법예고(2024. 12. 30. ~ 2025. 1. 20.) : 제출의견 없음
  - 입법예고(2024. 12. 30. ~ 2025. 1. 20.) : 제출의견 없음

금산군 조례 제 호

##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단서 중 “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”를 “「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금산군”을 “금산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금산군”을 각각 “군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후단 중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금산군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금산군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규칙”을 “「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규칙에 따라”를 “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금산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금산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·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“자동차세”라 한다)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·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

-----  
금산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 
-----

----- 군 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

----- 군 -----  
-----



등) ① 생략

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「금산군  
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」 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시행규칙에서 정  
한 서식에 따라 -----  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### ○ 비용 발생 요인

-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로 우편요금 절감이 예상됨  
⇒ 일반우편 송달 기준 : (종전) 30만원 미만 / (변경) 45만원 미만

### ○ 관련조문 : 지방세기본법 제30조, 제55조, 제56조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 상향으로 일반우편 건수는 증가한 반면, 등기우편 건수 감소

### 나. 추계 결과(산출기초 등)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등기우편 건수 감소로 연평균 4,200천원 절감 예상  
(총 5개년도 21,000천원 예산 절감 예상)

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없음

## 3. 작성자

재 무 과 장      손    종    건 (☎ 750-2410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△ 4,200	△ 4,200	△ 4,200	△ 4,200	△ 4,200	△ 21,000
공공운영비		△ 4,200	△ 4,200	△ 4,200	△ 4,200	△ 4,200	△ 21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## 관 계 법 령

「지방세기본법」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6조(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)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